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주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534

발의연월일: 2024. 8. 2.

발 의 자: 박주민·남인순·박홍배

임오경 · 임미애 · 김한규

서미화 · 김 윤 · 김남근

백혜련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난 7월, 아파트 정문에서 한 남성이 일본도를 휘둘러 아파트 주민을 살해하는 참극이 발생함. 피의자는 범행동기로 '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', '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' 등 망상증세를 보였으나, 경찰은 피의자가 도검 소지 허가 신고를 할 때 과거정신질환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소지를 허가하였음.

현재 총포 소지 허가의 경우 신체검사서와 더불어 정신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하지만, 도검 등 그 외의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으로 대체할 수 있어 도검 등의 소지 허가 규제의 허점이 지적되고있음.

이에 범죄 악용 가능성이 있는 도검·화약류 등의 경우에도 소지 허가를 신고할 때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를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청에 제출하도록하여, 소지 허가 제도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, 신체, 재산을 보호 하고자 함(안 제12조). 법률 제 호
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삭제하고,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에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12조(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 제12조(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 사기・전자충격기・석궁의 소 사기 · 전자충격기 · 석궁의 소 지허가) ① 제10조 각 호의 어 지허가) ① -----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총포・도검・화약류・분 사기 · 전자충격기 · 석궁을 소 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제1호 및 -----. <단서 삭제> 제2호의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 이 경우에는 신청인의 정신질 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정신 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 수 있도록 각 호의 구분에 따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 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제출하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 하다. 1. ~ 3. (현행과 같음) 1. ~ 3. (생 략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 ② ~ ⑤ (생 략)